

사방지 수익의 교부통지서

수익을 교부 받을 자	성명		생년월일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
토지 소재지	지번	지목	사방지 면적	비고	
			m ²		
교부내용	종류	수량	시기	방법	비고
교부사유					

「사방사업법」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
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

직인